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 이 지 : 9 의 1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5 장 입 찰
제 1 조 (목 적)	제 14 조 (입 찰)
제 2 조 (적용범위)	제 15 조 (개 봉)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16 조 (업체결정 및 금액조정)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6 장 계 약
제 4 조 (공사지원팀)	제 17 조 (계약 체결)
제 5 조 (현장소장)	제 18 조 (계약 이행)
제 3 장 협력업체 등록	제 19 조 (기성 신청)
제 6 조 (협력업체 모집)	제 20 조 (변경 계약)
제 7 조 (등록 추천)	제 21 조 (정산 계약)
제 8 조 (등록 말소)	제 22 조 (업체 변경)
제 4 장 현장설명 및 참여업체 선정	제 23 조 (주의 사항)
제 9 조 (현장설명 실시 요청)	제 7 장 협력업체 모집 및 사후평가
제 10 조 (첨부서류)	제 24 조 (사후 평가)
제 11 조 (참여업체 선정)	제 8 장 기 타
제 11 조 (현장설명 실시)	제 25 조 (관련규정과의 관계)
제 13 조 (현장 기안)	【 부 칙 】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2

개 정 이 력

[illegible]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협력업체의 선정, 등록,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적합 사항을 배제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지원 및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과 협력업체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동아지질(이하 “회사”라 한다)의 하도급 선정, 관리 및 계약업무에 적용하며, 사업본부 및 엔지니어링본부 모두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4 조 (공사지원팀)

- ① 공사지원팀은 본 규정에 있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협력업체 등록, 추천, 심사 및 말소
 2. 실행의 검토 및 실행회의 결정
 3. 현장설명 시행 결정
 4. 견적 및 입찰 관리
 5. 계약서 검토 및 승인

제 5 조 (현장소장)

본 규정에 있어 현장소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실행 작성
2. 하도급 시공품 평가
3. 협력업체 추천
4. 계약서 작성 및 체결
5. 하도급 시공품의 사용 전,후 부적합 발생시 관련부서에 통보
6. 협력업체 사후평가표 작성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4

제 3 장 협력업체 등록

제 6 조 (협력업체 모집)

- ① 공사지원팀은 협력회사 선정·운용 지침에 따라 격년으로 협력업체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신규협력업체를 모집, 관리한다
- ② 기존업체의 등록 유지 여부는 신규모집(격년) 심사 시 재심사를 실시한다.
- ③ 협력업체 결정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제 7 조 (등록 추천)

- ① 각 현장소장, 공사지원팀 및 임원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추천 된 업체는 협력회사 선정·운용 지침에 따라 협력업체등록평가를 진행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③ 단, 추천 업체의 경우 평가기준에 미달하여도 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지원팀 및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입찰참여를 위한 임시등록이 가능하다.

제 8 조 (등록 말소)

- ① 등록업체가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견적 제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4. 1년간 견적참가 요구에 2회 이상 불응 하였을 경우
 5. 협력업체 과실로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심각한 안전/환경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8. 공사노임, 기타비용을 체불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9. 발주처, 고객이나 회사 임직원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10. 과거 회사나 타 거래사에 손해를 발생시켜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11.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12.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업체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등록된 업체가 부도, 파산선고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사유발생 즉시 등록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장 현장설명 및 참여업체 선정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5

제 9 조 (현장설명 실시 요청)

- ① 현장소장은 투입 시작 최소 15 일전 현장설명 실시 및 참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시행요청서를 공사지원팀으로 송부하여 한다.
- ② 현장소장은 제 ① 항의 하도급 선정을 요청할 때에는 1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첨부서류)

현장소장은 공사지원팀에 현장설명 실시에 따른 하도급 선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급내역 및 실행내역
2. 현장설명서
3. 특수조건
4. 공내역서
5. 기 타

제 11 조 (참여업체 선정)

- ① 공사지원팀은 현장소장의 하도급 선정 의뢰를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장설명 실시 여부와 참여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시행품의서를 득하여야 한다.
- ② 공사지원팀은 제 ① 항의 결재를 상신할 때에는 2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해외현장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업체현황 서류를 청구, 검토 후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현장설명서에 참여하는 업체는 협력회사 선정·운용 지침에 따라 협력업체등록평가를 받은 협력업체 또는 임시등록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 12 조 (현장설명 실시)

- ① 공사지원팀은 현장설명 실시에 대한 일체의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현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사지원팀은 현장설명에 참여할 협력업체에 현장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현장설명은 원칙적으로 관련현장에서 실시한다. 단, 현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사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현장설명 시 공사지원팀은 입찰 일시와 방법에 대하여 현장설명 참여업체에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6

제 13 조 (현장 기안)

- ① 공사금액이 3,000 만원 이하(특허공법 포함)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하도급 시행 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 ② 현장소장은 업체는 협력회사 선정·운용 지침에 따라 협력업체등록평가를 받은 협력업체 또는 임시등록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제 ① 항에 의해 하도급 시행 품의서 작성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급내역 및 실행내역
 2. 3개 이상의 하도급 견적서

제 5 장 입찰

제 14 조 (입찰)

- ① 공사지원팀은 선정된 협력업체 중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견적을 접수 받는다.
- ② 견적서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접수하고 필요 시 밀봉된 상태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접수한다.

제 15 조 (개봉)

- ① 공사지원팀은 접수된 견적서를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개찰하고 오프라인 견적서의 경우 감사(팀원) 및 해당 부서장의 입회 하에 개봉한다.
- ② 오프라인으로 개봉한 견적서의 내용을 하도급 견적 개봉 확인서에 기재하여 개봉에 참여한 참석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16 조 (업체 결정 및 금액조정)

- ① 견적 개봉 후 공사지원팀은 시공 능력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보유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평가표(협력업체평가표, 안전보건 적격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최고점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구분	평가표	평가기준	비고
하도급	협력업체평가표	70%	
	안전보건 적격 평가	30%	
용역 (하자보수)	안전보건 적격 평가	100%	70 점 이상 업체로 선정

- ② 업체 평가에 따라 평점 70 점 이하의 업체의 경우 1 년간 입찰을 제한 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7

- ③ 선정된 낙찰자의 투찰 금액이 예정가액대비 85% 미만인 경우는 저가심사 후 선정하고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 재입찰 또는 금액 협상을 할 수 있다.
- ④ 개봉 되어진 견적서의 결과는 전자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품의서, 오프라인의 경우 하도급 견적 개봉 확인서를 첨부한 하도급 입찰 일지 또는 하도급 시행 품의서로 최종 시공 협력업체 선정의 승인 결재를 득한다.
- ⑤ 하도급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 되면 공사지원팀은 즉시 해당 현장 및 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 6 장 계 약

제 17 조 (계약 체결)

- ① 현장소장은 하도급 공사계약서 체결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 결재를 득한다.
 - 1.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 2. 특별 계약 조건
 - 3. 계약이행보증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6. 사용인감계
 - 7.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기술자경력증명서)
 - 8.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 ② 현장소장은 당사의 도급 단가보다 하도급 견적 단가가 상이하게 높은 경우 당사 직접공사비합계와 협력업체 직접공사비합계의 비율로 협력업체 단가를 조정 후 계약 체결한다.
- ③ 만약 제 1 항 각 호의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그 조건을 만족 시킬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여야 하며, 지정한 일정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일자를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다.
- ④ 하도급결재 완료 후 공사지원팀에서 계약체결 진행하며 원본은 공사지원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현장에서 보관한다. 현장소장은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 체결일 30 일 이내 공문발송요청서 결재를 득하고 하도급 계약통보 공문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⑤ 하도급계약 체결 후 현장소장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요청 결재를 상신하고 공사지원팀은 접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현장에 전달한다. 현장소장은 전달 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원본을 업체에 전달한다.
- ⑥ 비용점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8

정하여서는 안되며, 현장 여건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계약 이행)

- ① 현장소장은 하도급업체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시공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하도급업체의 계약 불이행 등 시공 중 발생하는 문제는 즉시 공사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선급금 및 기성 신청)

- ① 현장소장은 관련 법령에 준하여 하도급 기성 및 선급금의 대금지급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기성청구는 월 1 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현장 담당자는 매달 말일 기성검사를 실시한 후 월 현장 투입비 현황에 기록 후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최종 정산 기성지급 시 하자보수보증서 접수 후 대금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변경 계약)

- ① 현장소장은 공사 계약 변경 사유(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발생 시 해당계약의 당초 계약내역을 확인하고 변경사유 발생 30 일 이내 계약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결재를 득한다.
- ② 현장소장은 하도급 변경계약 결재 시 제 18 조 ①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한다.
- ③ 하도급계약 결재 완료 후 공사지원팀에서 변경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원본은 공사지원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현장에서 보관한다. 현장소장은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 체결일 30 일 이내 공문발송요청서 결재를 득하고 하도급 변경계약통보 공문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④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후 현장소장은 제 18 조 ⑤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전달한다.
- ⑤ 신규공종의 단가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전체 하도급율은 당초 하도급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정산 계약)

- ① 현장소장은 공사 목적물 수령 시 또는 공사 준공을 필한 후 정산을 진행하고 금액 변경 등 정산계약 필요 시 하도급 계약(변경) 결재를 득한다.
- ② 현장소장은 하도급 정산계약 결재 시 제 18 조 ①의 서류를 첨부하며 공사지원팀은 정산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 보증서 접수 후 계약체결을 진행해야 한다.
- ③ 하도급계약 결재 완료 후 공사지원팀에서 정산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원본은 공사지원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현장에서 보관한다. 현장소장은 계약 체결일 30 일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페이지 : 9 의 9

이내 공문발송요청서 결재를 득하고 하도급 정산계약통보 공문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④ 하도급 정산계약 체결 후 현장소장은 제 18 조 ⑤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 전달한다.

제 22 조 (업체 변경)

- ① 공사포기나 부도의 사정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기존업체의 조건 및 단가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존업체의 조건 및 단가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조건 및 단가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23 조 (주의 사항)

- ① 현장소장은 협력업체의 시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환경 사항을 고려하여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공사지원팀은 하도급업체의 자금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7 장 협력업체 사후평가

제 24 조 (사후 평가)

- ① 공사지원팀은 매년 반기 1 회 기성발생 하도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현장소장은 하도급 평가표를 작성하여 공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소장이 평가한 하도급 평가 및 공사지원팀 담당자의 평가, 안전본부의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종합 집계하여 하도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결재를 득한다.
- ③ 하도급 업체 평가에 따라 평점 70 이하의 업체의 경우 1 년간 입찰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제 27 조 (관련규정과의 관계) 하도급과 관하여 본 규정에 적용 항목이 없을 시에는 일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문서번호 : BUS-규정-00000
개 정 : 0
폐 이 지 : 9 의 10

[별표 1]

협력업체 선정평가표

1. 회사개요

평가일

202 . . .

회 사 명			대 표 자				
보유면허 (주력면허순)	등록 공종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순위		지역	전국%	
			지 역(업체/전체)	전 국(업체/전체)			
					#DIV/0!	#DIV/0!	
					#DIV/0!	#DIV/0!	
					#DIV/0!	#DIV/0!	

2. 평 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배점 기준				
시공 (40)	시공능력 (25)	시공능력평가액	10		5% 이내	10% 이내	20% 이내	30% 이내	30% 미만
		*시공능력순위확인서(전국순위)			10	9	8	7	6
		성장성 (금년도 실적/전년도 실적) × 100	5				100% 이상	100% 이하	50% 이하
							5	4	3
		기술자 보유상태 (자격증 보유 인원)	5				5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하
							5	4	3
		동일 공사 수행 이력 (3년 이내)	5				6건 이상	6건 이하	3건 이하
							5	4	3
		공사 이행 적정성 검토 (설계도서 검토, 공정 및 시공 관리 계획)	5				우수	양호	보통
							5	4	3
		제재처분 사항	5						무
									유
	실적 (15)	최근3개년도 실적 (최근 5개년도 기성실적증명원)	10		70%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10%미만
					10	9	8	7	6
소 계			45	0					
재무 (25)	성장성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100~100	5		A- 이상	B- 이상	C- 이상	C- 미만	
					5	4	3	2	
	매출액 경상이익율	(경상이익÷매출액) × 100	5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5	4	3	2	1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100	5		100%미만	150%미만	200%미만	250%미만	250%이상
					5	4	3	2	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5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5	4	3	2	1
소 계			20	0					
안전 (30)	안전 평가	(안전보건 적격 평가 점수) × 30%	30						
소 계			30	0	안전 평가 18점 미만 시 승인 불가				
경영 (5)	품질·안전 환경	ISO 인증 및 최근3년간 관공서 및 1군건설사 포상	3					유	무
								3	1
		시·국세 완납증명서 여부	2		※ 유효기간 확인			유	무
								2	0
소 계			5	0					
평가점수 합계			100	0					

◆ 평가 총점	0			
◆ 평가 등급	☐ A 90 이상	☐ B 80 이상	☐ C 70 이상	☐ D 60 미 만
◆ 승인 여부	☐ 승인 ☐ 미승인			

담당자	승인